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2. 3(수)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10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0. 1. 25, 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
 -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여,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안 제6조)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74호, 2008. 12. 26. 공포, 2009. 4. 27.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안 제6조)
 -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고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 되었는데, 개정 조례안이 1년이상 늦게 상정한 이유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타 시도 현황】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대장가액		비고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충남		○	
강원		○	
경기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 광역자치단체(시·도)

시도	대장가액		비고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충북	○		
충남	3,000만원 이하		
강원		○	'09.09.25.개정
경기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3,000만원 이하		
서울		5억원 이하	
부산		○	
인천		1억원 이하	
대구		○	
대전		○	
광주		○	
울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같은 호 가목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2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임사무) ① (생 략)</p> <p>1. (생 략)</p> <p>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 산·보존재산</u>의 관리와 사용· 수익허가</p> <p>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 의 관리와 대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나. 교육청과 제 2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의 용도변 경·폐지</p> <p>다. 교육청과 제 2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의 매각·교환·양여· 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p> <p>라. 교육청의 <u>행정재산·보존재산</u> 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p> <p>3. (생 략)</p> <p>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u>행정재 산·보존재산</u>의 관리와 사용·수 익 허가</p> <p>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u>잡종재산</u> 의 관리와 대부(예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p>	<p>제4조(위임사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u>행정재 산</u>의 -----</p> <p>나. ----- <u>일반재산</u> -----</p> <p>2. (현행과 같음)</p> <p>나. ----- <u>행정재산</u>-----</p> <p>다. ----- <u>일반재산</u>-----</p> <p>라. ----- <u>행정재산</u>-----</p> <p>3. (현행과 같음)</p> <p>가. ----- <u>행정재산</u> -----</p> <p>나. ----- <u>일반재 산</u>-----</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p>

현 행	개 정 안
<p>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 ----- ----- ----- ----- -----.</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2. 행정재산----- ----- ----- -----</p>
<p>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p>	<p>3. 일반재산-----</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 ----- 5천만원 ----- -----</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4. ----- 행정재산----- ----- -----</p>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가. ----- ----- ----- 5천만원 ----- -----</p>

현 행	개 정 안
<p>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나. ----- ----- ----- 5천만 원 -----</p>
<p>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3장 행정재산</p>
<p>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u>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관리 및 처분) ----- ----- <u>행정재산</u>----- ----- ----- -----.</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p> <p>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p> <p>① <u>행정재산</u>----- ----- ----- ----- ----- ----- ----- -----.</p> <p>② <u>행정재산</u>----- ----- ----- -----.</p>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 ----- -----.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행정재 산----- ----- ----- -----.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행정재산----- ----- ----- ----- -----. ② ----- 행정재산----- ----- ----- 행정재산----- ----- -----.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 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 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잡종재산</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p>	<p>③ ----- 행정재산----- ----- ----- ----- ----- ----- ----- ----- ----- ----- ----- ----- ----- ----- ----- -----.</p> <p>⑤ ----- ----- ----- ----- 행정재산----- ----- ----- ----- ----- -----.</p> <p>제25조(일반재산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일반재산</p> <p>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 -----</p>

현 행	개 정 안
<p>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p>	<p>----- -----.</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 일반 재산----- ----- ----- -----.</p> <p>② ----- ----- ----- ----- ----- 일 반재산----- ----- ----- -----.</p> <p>③ -----일반 재산----- ----- ----- -----.</p> <p>④ ----- ----- ----- 일반재산----- -----</p>

현행	개정안
<p>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 39조제 2항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와 제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8 조제 항에 따라 <u>잡종재산</u>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 ----- -----.</p> <p>⑤ ----- ----- ----- <u>일반재산</u>----- ----- ----- -----.</p> <p>제42조(신탁의 종류) ----- ----- <u>일반재산</u>----- ----- ----- ----- ----- -----.</p>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